

2016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이사회 및 총회

□ 일시 및 장소

- 2016년 3월 25일(금) 15:30분(이사회) / 17:20분(총회)
- 서강대학교 정하산관 J311

이사회 회순

I. 이사회 개회

1. 성원확인 및 개회선언

참석이사 : 왕상한, 서철원, 오선영, 박언경, 유희진, 최승환, 정찬모,
김채형, 이세련, 김규태, 이재형, 주진열, 손기윤
위임이사 : 강준하, 김준기, 이지형, 이재민, 김두수, 유준구

2. 학회장 인사말씀

II. 이전 회의록 낭독

○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의록 자료로 대체함.

III. 보고안건

1. 2016년 주요일정 소개

일자	학술행사명	비고
3월 25일	신진학자학술대회	
3월 31일	국제경제법연구 제14권 1호 발간	2월 20일 논문접수마감
6월 10일	국내학술대회 (국내개최)	상사중재원 공동개최 추진

7월 31일	국제경제법연구 제14권 2호 발간	6월 20일 논문접수마감
8월 4주차	WTO 모의재판 대회	산업통상자원부 후원
10월 24일	국제학술대회 (해외개최)	TPP 참여국과 공동 개최
11월 30일	국제경제법연구 제14권 3호 발간	10월 20일 논문접수마감
12월 15일	국내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 학회운영체제 정비작업 진행현황 보고

(1) 이사책임제도 도입

- 정관상 규정이 없는 사무국장 제도 폐지하고 직무이사 중심으로 학회운영토록 추진함
- 필요시에는 해당 직무이사가 업무보조원을 두도록 하고, 업무보조원에게는 소정의 활동경비를 지급하도록 함
- 회계 및 세무업무는 외부세무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토록할 예정임
- 개선안에서도 기존 사무국장의 활동경비(50만원) 내에서 운영가능

(2) 재정부분

1) 기금통장

- 2013.2.26.~2016.3.14(3년 거치)
 - 하나은행 정기적금
 - 원금 7,000만원(연 3%) → 75,365,663원 적립
- 2016.3.14.~2019.3.14(3년 거치 갱신)
 - 학회발전위원회 결정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2개 금융기관에 분산예치
 - 우체국 정기적금 : 원금 45,000,000원 (연 1.7%)
 - 하나은행 정기적금 : 원금 30,365,663원 (연 1.58%)
 - 2015년 총회결의에 따라 학회장(인장), 선임감사(통장) 분리 보관하도록 진행

2) 기타 회계업무의 체계화 및 투명화

- 학회 세무업무 위탁계약 체결 예정
 - 2016년 3월 이사회 및 총회 동의 후 진행

- 고정지출 : 월 15만원 / 특별신고 업무 : 협의 후 지출
- 법인체크카드 발급 (2장)
- 관련 규정 및 양식의 제정
 - 회계처리규정 제정 예정 (금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 지출결의서 제도 도입

(3) 위원회 운영 지원

- 1) 3개의 특별위원회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활동비 지원
- 2) 연 100만원 이내에서 회의비, 회의자료 복사비 등 지원
 - 학회명의로 등록된 기프트카드를 위원장에게 지급
 - 영수증에 회의명칭 및 참석자를 기재하여 사무국에 제출

(4) 기타

- 1) 회원명부 재정비
- 2) 단체회원 가입신청서 및 관리내용 정비
- 3) 관련규정 및 문서 정비 : 위원회운영규정, 각종위원회 명부, 단체회원가입신청서, 업무위탁계약서, 인수인계서 등

IV. 심의안건

1. 학회기금의 목적기금 용도 결정에 대한 협의

(1) 안건상정의 배경

- 약 7,53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음
- 기금의 발전적 운용을 위해 기금의 목적을 지정할 필요성 제기
- 2016년 3월 8일 개최된 학회발전위원회 상정 안건임

(2) 논의결과

- 운영기금(경상운영비)과 목적기금의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의결
- 목적기금의 적립목표액을 2억원으로 의결함
- 목적기금의 적립목표액이 달성되는 시점에 목적기금의 용처를 논의하도록 함.

- 당해연도 집행부는 매년 최소 1,5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목적기금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함.
- 목적기금 적립을 위해 학회발전위원회도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정관개정안 심의

(1) 심의대상 규정

- 제6조 (특별회원)
 - 특별회원을 기관회원과 찬조회원으로 구분하여 운영
- 제17조 (위원회)
 - 위원회 구성인원 제한 규정 삭제

(2)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6조(특별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특별회원) ①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직무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특별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관회원 : 연회비를 납부하고 학회가입절차를 필한 국제경제법 또는 관련분야 기관 또는 단체 2. 찬조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③ 전항의 찬조회원은 후원이 있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1) 현행 규정은 특별회원에 관한 포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연회비를 납부하는 기관회원과 단일행사를 후원하는 찬조회원의 구분이 없음. 2) 매년 회비를 납부하는 기관에 대한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관회원과 찬조회원을 구분함. 3) 회원가입절차의 간소화 또는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이사회의 승인을 직무이사회의 동의로 개정함.
제17조(위원회) (1) 본 학회에는 학술상위원회, WTO 모의재판 운영위원회, 학회발전위원회 등 학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위원회	제17조(위원회) (1) 현행과 동일	현행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6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1) 학회발전위원회는 현재 8명

를 둘 수 있다. (2) <u>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위원장은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회장에게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직무이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2) 전단 삭제. 후단은 현행과 동일 (<u>위원장은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u>) (3) 현행과 동일 (4) 현행과 동일	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 향후에도 학회발전위원회는 매년 구성원이 1명씩 증가됨. 따라서 동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구성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토록 함.
--	---	--

(3) 심의결과

○ 제6조 (특별회원)

- ‘직무이사회 의 동의’를 ‘이사회 의 동의’로 변경하여 총회에 안전으로 상정하되, 찬조회원은 원안대로 직무이사회 의 동의요건으로 하여 안전으로 상정함.

○ 제17조 (위원회)

- 원안대로 총회 안전으로 상정함.

○ 기타안전

- 세무당국에서 회비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는 듯 하므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회비’ 용어를 ‘기부금 또는 후원금’ 등의 명칭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가 총회안전으로 상정함.

3. 학회발전위원회 규정 제정

(1) 안전상정의 배경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규정 제정의 필요성

(2) 규정의 주요내용 (첨부 1 참조)

- 총 6개 조문으로 구성
- 자문기구의 역할임을 명기

- 위원회 의결내용을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
- 학회발전위원회규정의 개정권한은 이사회에 부여

(3) 심의결과

- 제3조 2항을 “..... 전임회장으로 위촉하며”로 수정.
- 수정한 내용의 규정을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함.

4. 학회세무회계 위탁 건

(1) 안건상정의 배경

-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 및 회계처리의 체계성과 전문성이 세무 당국에 의해 요구되고 있음.
- 학회사무국 행정의 간편화와 효율화의 실현
- 학회재정 운영의 투명성 담보

(2) 추진방안

- 세무법인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 월 15만원의 경비로 기장업무 위탁 및 자문활동 진행
- 법인세신고 등 특별업무시에는 사전협의를 따른 추가비용 지출

(3) 심의결과

- 학회세무회계 업무의 세무법인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함
- 학회 자체의 세무회계행정 업무처리의 역량강화 노력이 필요함에 공감함
- 기부금납부단체 자격유지, 학술연구용역수행 등의 업무와 연계하여 세무법인 위탁의 필요성 공감
- 제안 안건대로 업무위탁계약 체결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함.

5. 기관회원 회비의 결정

(1) 안건상정의 배경

- 2016년도 외부기관의 기부금 출연 및 기관회원 가입문의가 있음
-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기준의 마련이 필요

- 동 안건은 정관 제15조 (1)항 3호에 따른 이사회 의결 안건임

(2) 주요내용

- 첨부 2 기관회원 입회원서(안)을 토대로 논의 진행
- 기관회원 회비 : 500만원 이상
- 기관회원 가입단체의 구성원에게는 기관회원의 지위 부여 (개인 별 회비는 면제) : 500만원에 10명을 기준으로 운영.

(3) 심의결과

- 제안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함.

6. 기타안건

총회 회순

I. 총회 개회

1. 성원확인 및 개회선언
2. 학회장 인사말씀

II. 이전 회의록 낭독

-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의록 자료로 대체함.

III. 감사패 증정

- 정찬모 전임회장

IV. 보고안건

1. 2016년 주요일정 소개
 - 이사회 자료 참조
2. 학회운영체제 정비작업 진행현황 보고
 - 이사회 자료 참조
3. 이사회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결과 보고
 - 이사회 자료 참조

V. 심의안건

1. 학회기금의 목적기금 용도 결정에 대한 협의

(1) 안전상정의 배경

- 약 7,53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음
- 기금의 발전적 운용을 위해 기금의 목적을 지정할 필요성 제기
- 2016년 3월 8일 개최된 학회발전위원회 상정 안전임

(2) 이사회 논의결과 보고

- 운영기금(경상운영비)과 목적기금의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의결
- 목적기금의 적립목표액을 2억원으로 의결함
- 목적기금의 적립목표액이 달성되는 시점에 목적기금의 용처를 논의하도록 함.
- 당해연도 집행부는 매년 최소 1,5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목적기금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함.
- 목적기금 적립을 위해 학회발전위원회도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총회 논의결과

- 이사회 논의결과 대로 승인함.

2. 정관개정안 심의

(1) 심의대상 규정

- 제6조 (특별회원)
 - 특별회원을 기관회원과 찬조회원으로 구분하여 운영
- 제17조 (위원회)
 - 위원회 구성인원 제한 규정 삭제
- 정관에서 “회비”로 표기된 용어를 “기부금 또는 후원금”으로 변경

(2)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6조(특별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특별회원) ①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특별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관회원 : 연회비를 납부하고 학회가입절차를 필한 국제경제법 또는 관련분야 기관 또는 단체 2. 찬조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③ 전항의 찬조회원은 후원이 있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1) 현행 규정은 특별회원에 관한 포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연회비를 납부하는 기관회원과 단일행사를 후원하는 찬조회원의 구분이 없음. 2) 매년 회비를 납부하는 기관에 대한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관회원과 찬조회원을 구분함. 3) 회원가입절차의 간소화 또는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이사회의 승인을 직무이사회의 동의로 개정함.
제17조(위원회) (1) 본 학회에는 학술상위원회, WTO 모의재판 운영위원회, 학회발전위원회 등 학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회장에게 활동내용을 보고하고, 직무이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 (1) 현행과 동일 (2) 전단 삭제. 후단은 현행과 동일 (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현행과 동일 (4) 현행과 동일	현행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6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1) 학회발전위원회는 현재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 향후에도 학회발전위원회는 매년 구성원이 1명씩 증가됨. 따라서 동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구성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토록 함.

(3) 이사회 심의결과 보고

- 제6조 (특별회원)
 - ‘직무이사회의 동의’를 ‘이사회의 동의’로 변경하여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함
- 제17조 (위원회)
 - 원안대로 총회 안건으로 상정함.
- 기타안건
 - 세무당국에서 회비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는 듯 하므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회비’ 용어를 ‘기부금 또는 후원금’ 등의 명칭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가 총회안건으로 상정함.

(4) 총회 논의결과

-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함,

4. 기타안건

VI. 폐회

첨부 1

학회발전위원회 규정

2016년 3월 25일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학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의 목적)

- ① 위원회는 정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② 위원회는 학회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회기금의 운영 등 학회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전·현임 회장으로 구성된다.
- ② 위원장은 가장 최근에 임기를 마친 전임회장으로 위촉하며, 간사의 역할은 현 회장이 수행한다.
-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연임되는 것으로 본다.
- ④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위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차기년도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 ⑤ 당해 연도 집행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학회발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학회 회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석부회장과 총무이사는 옵저버 위원으로 참석한다.

제4조 (위원회의 역할)

-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학회재정운영
 2. 학회제도개선
 3. 학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국제학술회의를 포함한 학회 학술활동의 기획
 5. 기타 정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추진
 6. 기타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장, 직무이사회 또는 각종 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
- ② 위원회는 집행부와 협력하여 학회기금조성을 위한 노력을 수행한다.
- ③ 위원회의 의결은 총의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 총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④ 위원회는 의결된 내용을 이사회의 안건으로 부의함으로써 당해 안건에 대한 역할을 종료한다.

제5조 (위원회 활동의 보조)

회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무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